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14시 - 18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관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동주최 | 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남인순,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목 차

■ 식 순	3
■ 인사말	5

■ [1부] 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이행평가 및 향후 개정방향

- 발표1.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우리가 평가하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변호사 20
- 발표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정해야 할 것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변호사 38
- 발표3. 주거급여 제도의 개선과제
-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연구원 58

■ [2부] 기초법시민평가 토론회

- 토론1.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 수급신청자 김종언 68
- 토론2. 소득을 보충할 권리와 존엄을 - 기초생활수급자 차재설 71
- 토론3.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현실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북주거복지센터 김세은 사회복지사 75
- 토론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준섭 과장 79
- 시민평가단 평가 결과 및 권리선언문 80

2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단

식 순

■ 14:00 [개회] 인사말

개막식 사회: 민달팽이유니온 가원 활동가
공동주최 의원 인사말

■ 14:30 [1부] 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이행평가 및 향후 개정방향

- 좌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
- 발표1.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우리가 평가하자
 - 전 중생보위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변호사
- 발표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정해야 할 것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변호사
- 발표3. 주거급여 제도의 개선과제
 -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연구원

■ 16:30 [2부] 기초법시민평가 토론회

- 좌장.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
- 토론1.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 수급신청자 김종언
- 토론2. 소득을 보충할 권리와 존엄을 - 기초생활수급자 차재설
- 토론3.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현실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북주거복지센터 김세은 사회복지사
- 토론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준섭 과장
- 권리선언문 발표

4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단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개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민 평가 토론회: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생활보장법 시민 평가단>을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 해주신 김민석,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강은미 의원님, 그리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님, 전가영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변호사님,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님께 감사드리며, 2부 좌장을 맡아주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님, 시민평가단 발언을 해주실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이신 김종언님,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차재철님, 김세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사회복지사님, 유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무관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2021~2023)’ 이행을 점검하고, 실제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며 앞으로의 방향성과 개선 방

안을 건의하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비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수급 당사자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급 당사자 분들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이 꼭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소득보다 지출이 늘면서 10가구 중 6가구는 적자살림을 꾸렸으며, 1분위 적자가구 비율은 62.3%로 2022년 2분기 53.7%보다 8.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고 튼튼하게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인간다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지, 가난으로 고통받는 빈곤층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우며 복지 정책의 방향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더 많은 약자들을 지원의 테두리 안으로 품는 정책적 노력없이 약자복지만을 외치는 것은 허울 뿐입니다.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빈곤 사각지대가 두텁다는 점은 국민

8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어왔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약 73만명에 달하고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에서도 2017년 한국 사회보장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약자복지를 표방한다면, 우리 사회의 최후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 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 기준 현실화하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를 통해 약자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활급여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마찬가지로 수급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를 위해 자활사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급여를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제도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대표의원 김민석**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며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대표의원 김민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복지 패러다임을 ‘인권으로서의 복지’로 변화시킨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시혜적인 기존 생활보호법을 극복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도록 국민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법률로서 지원하는 장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안타깝게도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사회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 누구라도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국민기초생활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수급자로 살기도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그리고 생계를 위한 최저급여를 위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문제 등은 여러 해 동안 논의되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0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단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를 실제 수급권자의 목소리와 함께 논의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실제 정책의 수혜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직능단체 들에서는 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다니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설명하고 있지만 수급권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평가단들이 참여해서 제도의 공백과 약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수급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남인순,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강은미 국회의원님, 그리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특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오늘 당사자들과 전문가분들께서 논의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민 평가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발언을 준비해주신 수급권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경제성장과 대비되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복지체계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구축했고, 2015년 7월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도 시행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

12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단

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원 세 모녀와 신촌 모녀, 올해 1월에는 성남 세 모녀까지 “죄송합니다.” 라는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복적으로 비극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충족해야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생계급여에 한해서는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취약계층에게 이 기준은 빈곤의 늪을 에워싸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52만 3900명의 고위험군으로 선별됐지만, 이 중에 복지 서비스를 연계 받은 사람은 절반 수준인 27만 1102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중단되거나 아예 수급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은 가난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인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 제도’가 되지 않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시민 평가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저 또한 빈곤이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대안 마련과 제도개선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단>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김민석, 남인순, 고영인, 서영석, 강은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시민평가를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3년이 흘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 비현실적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건 이후,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단전·단수 등을 통한 위기 상황 확인이 어려우며, 발굴하더라도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인해 제공할 수 있는 공적 급여 자체가 적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수급권자의 시각

14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단

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는 실효성을 점검하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국민 모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숏한 지적이 이어져왔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가난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부양받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영인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민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보람이 큼니다. 뜻을 함께해주신 남인순, 김민석, 서영석, 최혜영 의원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토론을 빛내주실 전문가와 패널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 해주신 청중들께 환영 인사 전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복지국가를 꿈꾸며 다양한 제도를 설계하고 손질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도입 후 20여 년이 흐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는 막아도 막아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신촌 세 모녀 사건 등 제도의 빈틈에서 신음하다 끝내 죽음에 이른 분들을 떠올리면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작년 위기가구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은 분은 2.1%에 불

16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단

과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위기가구는 늘어만 가지만, 수급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위험이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게 되는 보편복지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왜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제도가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시민평가’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왔던 길을 되돌아볼 수 있는 블랙박스이자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네비게이션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저 또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늘 힘쓰겠습니다. 새로운 복지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국회의원 고영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논의하는데 항상 배제되고 있는 수급자의 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까지 논하는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아주 기초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보장제도의 범위나 수준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보장제도마저도 가혹하고 까다로운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늘 가난을 증명해야하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산정근거를 논의하는 위원회 회의에는 당사자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가장 약자인 가난한 시민들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서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하고,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 여건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법안들도 발의 했습니다. 이 법이 하루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도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국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여러 제안을 경청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보장제도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상관없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제2차 국민기초생활제도 종합계획 이행평가 및 향후 개정방향

발표1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우리가 평가하자

발표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정해야 할 것

발표3 주거급여제도의 개선과제

발표 1.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우리가 평가하자

전 중생보위 위원,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박영아 변호사

1. 들어가며

기초생활보장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러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들 수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중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편적 안전망이다. 여기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생활이 어려워진 원인과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1조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란 당장 굶어죽거나 얼어죽지 않을 정도의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국가의 구성원들이 사

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가가 임의로 베푸는 자선이 아니며 수급자가 되는 순간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손상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에 새겨진 사회적 합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고 엄격하고 까다롭고 경직된 기준에 맞추어 가난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멸감과 낙인감은 그 자체로 이미 구성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관련 정책들이 수립되는 과정도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에 적용될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결정하고, 3년마다 수립되는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어떤 안건들이 심의되고 있는지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의견제시 역시 불가능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은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및 동법 제44조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이나, 발제문 작성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중으로, 곧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급여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2 참조)는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의 직접적 당사자인 수급자는 물론, 현재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최후의 안전망 외에 기댈만한 뒷배가 없는 잠재적 수급자의 의견은 들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즉, 이들을 온전한 국가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이하에서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본인이 아닌,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수급자격을 따지는 기준이다. 가족 간 부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근거로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 외에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잠재적 가능성도 없다는 점까지 입증하도록 하는 요건으로서, 학계,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공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 힘과 후보 단일화한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전 정부가 공약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포함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 '18년 기준 73만명(48만 가구) •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감소 및 빈곤 사각지대 추가 발생에 대응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의 수급자 대비
----	--

	<p>열악한 소득실태와 사적 부양 악화 경향이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의 경상소득은 수급자 대비 67.3~86.5% 수준('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소득 하위 10%의 23.2%는 공적이전소득이 전무, 공적이전소득이 있더라도 지원액(36만원)이 전체 평균(42만원)보다 낮음('19.3분기 가계동향조사) * 소득 1분위 사적이전소득은 월 7.9만원 수준('19.4분기 가계동향조사)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2022년까지 완결 •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 제외하고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 • 제3차 기초생활종합계획 수립시까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마련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한 생계급여 18만가구(26.2만명)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4.8만가구(6.7만명) 추가 지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을 통한 의료급여 13만가구(19.9만명) 신규 지원

당시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 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실상은 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이었다(2021년 10월부터 적용). 부양의무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양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그의 부양능력과 의사는 본질적으로 수급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근본적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부양의무자

24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단

의 재산·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가지고 확인하고,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¹⁾에서 수급권자의 증명책임이 완화되고 신청이 더 수월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례1]

중증장애를 가진 A씨는 최근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탈락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최근 은퇴해 강원도로 이주했는데,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어머니가 이주한지 반년이 지난 이후에야 탈락통지서가 도착했는데, 반년간의 의료급여 내역도 환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는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어 의료급여가 필수적이다. A씨는 20년간 살던 시설을 나와 어머니와 10년간 함께 살았었다. 시설에 사는 A씨와 함께 살기 위해 어머니는 평생 수고스러운 노동을 해왔는데 어머니에게 다시 부양의무자라는 족쇄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해서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대해 언론브리핑하면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마련하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방안 등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덧붙이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²⁾ 그러나 현재까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수립하거나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선정기준이 더 엄격한(기준중위소득 30%)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다수의 수급권자들이 생계급여를 수급하면서

1)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75면

2) 2020. 8. 1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브리핑

도 선정기준이 더 높은(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 역시 반영하지 않으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는 종전과 같아³⁾ 처음부터 생계급여만 받겠다는 게 아니라면 증명책임 완화 역시 그 의미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사례2]

두 아이를 혼자 키운 싱글맘이었던 B씨는 고부갈등으로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B씨의 아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며느리를 보지 못하는지는 수년이 지났다. 이따금 손주가 영상통화를 걸 때도 있지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아들은 해외로 이주했는데, 이 사실을 아들이 아니라 조카로부터 전해들을 정도로 관계는 악화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B씨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아들내외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의료급여 신청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신경정신과를 비롯해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어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으나 6개월, 1년에 한 번씩 진단서를 낼 때마다 탈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서적,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놓인 수급권자의 수급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장기관은 급여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녀의 해외이주가 곧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니 ‘단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B씨는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불면과 공황 증상 악화를 겪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2021. 10. 대폭 완화되기 전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15만명 넘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3)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86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수가 2021년 7월까지 약 1만4천명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상으로는 약 11만명의 신규수급자 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이 시행된 후 의료급여 수급자가 오히려 감소한 사실이다. 2023년 7월 현재도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020년 7월 대비 약 9천명 증가한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선정기준이 더 낮은(기준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20년 7월까지 선정기준이 더 높은(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수급자 수 대비 약 14만명 적었지만, 2021년 7월 의료급여 수급자 수에 육박했다가 이후 큰 폭으로 추월한 것은 의료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행 정책이 가져온 기현상이라 할 수 있다.

급여별 수급자 수(중복)⁴⁾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2020년 7월	298,465	1,281,401	1,426,197	1,866,938
2021년 7월	312,287	1,431,633	1,440,652	2,103,074
2022년 7월	301,900	1,542,742	1,434,942	2,227,001
2023년 7월	301,661	1,596,761	1,435,338	2,332,725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에서 배제된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의 소득최저보험료는 월 1만9500원)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등 저소득 건

4)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수(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본인부담금을 경감하거나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나 특정 거주지, 연령, 질환 등 추가적 사정을 고려하거나 진료비 선납을 요하는 제도들이어서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나 본인부담금 부담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노동기구의 「사회적 보호의 국가적 최저선에 관한 권고, 2012(제202호)」에 따르면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대가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빈곤에 처할 위험이 증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의료보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접근성이다.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은 결국 빈곤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막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고 건강권을 침해한다.

교육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이어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은 부양의무자기준이 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요건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제도의 효용을 저해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 즉 급여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집단이 형성됨은 의료급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3.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기준중위소득에 관한 계획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계획 중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의 향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p>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의 불안정성 및 국가 공식소득 분배지표 변경에 따라 산출방식 변경 필요성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방식) 활용가능한 최신 가계동향조사(농어가포함) 중 위소득에 최근 3개년 중위소득평균 증가율을 2회 적용하여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출 * '17.12. 국가 공식소득분배지표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4만원 대비 기준중위소득 451.9만원(56.4만원, 12.5%의 격차 발생)]
<p>주요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 소득 평균 증가율 적용하여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급격한 경기 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앙생활 보장위원회 의결로 증가율 보정 가능 ▪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 사이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최신 격차(1+격차율)의 1/6승을 추가 증가율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21년도 적용 추가 증가율은 '18년 격차 (1+12.49%)의 1/6승(1.98%)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되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계획 의결 연도인 2020년과 그 이듬해인 2021년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가, 2022년 처음으로 온전히 적용되었다.

	2021	2022	2023
<p>기준중위소득 인상률(4인 가구 기준)</p>	<p>2.68%</p>	<p>5.02%</p>	<p>5.47%</p>

2023. 7. 28.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올 올해 대비 6.0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본증가율’ 3.47%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를 적용한 값이다. 여기서 기본증가율은 최신 통계자료에 따른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가율을 말한다. 추가증가율은 통계자료 변경으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을 말한다.

정부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률이 역대 최고라며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도, 기본증가율을 산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⁵⁾ 정부 보도자료만 보면 기본증가율 3.47%가 최신 통계자료에 따른 최근 3년 평균증가율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3년 평균증가율의 80%만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도자료는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 하였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그러나 2023. 12. 30.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물가상승률이 5.1%에 이르고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⁶⁾ 2023년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3.5%에 이룸⁷⁾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0년 결의한 원칙적 산정방식에서 이탈하는 근거로는 빈약하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서 “급격한 경기 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기본증가율 보정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어져 온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오히려 인상할 사유가 된다.

5) 보건복지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2023. 7. 28.자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507 2023. 8. 28. 접속)

6) ‘올해 물가 5.1%↑, 외환위기 이후 최고... 외식물가 30년만 최고치(종합)’, 2022. 12. 30. 연합뉴스 기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71923?sid=101> 2023. 8. 28. 접속)

7) ‘[속보]한은, 올해물가상승률 전망 3.5% 유지...내년 2.4%’, 이데일리 2023. 8. 24.자 기사(<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17126635710600>. 2023. 8. 28. 접속)

요컨대, 이번 인상률은 특별한 결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중위소득 최근 증가율이 원래 높았던 데 따른 것으로, 오히려 정부 결단은 평균증가율을 전부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그러므로 통계자료와 기준중위소득 사이의 격차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여전히 기본증가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제2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까지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2%으로 인상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조건부 수급 폐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당시 종전의 생활보호제도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소득활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수급자를 시혜적 “보호” 대상으로 본 생활보호법과 달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은 권리적 성격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소득활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공공부조를 받도록 함으로써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수급권을 조건부 권리로 규정하였다. 사회권의 적극적 보장을 통한 불평등과 차별 문제의 극복보다는 공공부조 수급자가 “의존적”이라는 인식 하에

수급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그런데 자활사업이 조건부형식으로 도입되며 오히려 연령, 소득수준, 소득활동 능력 등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어 각각의 집단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했다고 평가⁸⁾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조건부수급이 실제 근로가능 연령대 수급자들의 급여진입을 제한하거나 급여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리한 취업 강요는 수급자의 건강에 위협을 끼치거나 생명을 빼앗기도 한다.

[사례3]

심장혈관 문제로 두 개의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한 C씨는 2008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수급자가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1월 실시한 조사를 통해 C씨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 C씨는 건강상태 때문에 일 하는 것이 어렵고 두렵다는 점을 호소했으나 고용노동센터를 통해 취업교육을 받았다. 2014년 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직한 그는 5월과 6월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했고, 두 번째 이송 당시 복부 전체에 감염이 퍼진 것을 확인, 일주일 뒤 코마상태에 접어들고 8월 사망했다.

C씨는 일하기 어려운 몸상태라는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청은 연금공단의 결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단을 고수했다. 또, 당시 수원시는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고인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반 노동시장 일자리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는 무리한 취업과 질병으로 이어졌다.

이후 유가족은 그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한 근거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에 질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9년 승소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행되는 근로능력평가, 취업 여부에 따른 수급 제제와 무리한 시장취업

8) 강진연.(2015).사회권의 조건.사회이론,(48),33-65.

강요는 조건부수급의 모순을 더욱 극대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취지 달성을 가로막는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은 이에 비해 다소 진전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과가 아니라 소득 보장정책이자 적극적 일자리 제공정책으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자활사업 목표를 다변화 해 참여자의 변화에 발맞추자는 목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p>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취업지원제도·사회적 경제 영역 등과 연계하여 소득보장 정책이자 적극적 일자리 제공정책으로서 자활사업 역할 확대 필요 • 실제 참여층(자활역량부족)과 정책 목표(탈수급)의 부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 역량이 낮은 참여자의 증가에 따라 자활사업의 목표를 다변화하여 사람중심 자활모델 구축 필요 * 자활참여자 고령화(65세 이상 비중 '17년 8.6% →'19년 9.3%), 자활일자리 5년 이상 참여자 비중 30.5%, 탈수급 후 자활사업 재참여자 증가('17년 583명 →'19년 991명) 등 • 자활기업 매출액·고용인원 등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질적·양적 성장 정체에 직면 • 자산형성지원은 지난 10년간의 누적적 발전에 따른 설계구조의 복잡성을 해결하여 자립지원 경로로서의 효과성 제고 필요
<p>주요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과 타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람중심 자활모델 정립 • 자활사업 성장단계별 지원기반 마련 및 기업모델 육성 •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자립 지원 강화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과 정도는 자활사업 일자리 개수와 연결된다. 일자리가 부족하면 근로능력이 떨어지거나, 일자리를 쉽게 적응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활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바깥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자활참여자 목표 인원은 76,000명이다. 그러나 각 연도별 자활근로 일자리 목표인원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2019년 46,000명, 2020년 58,000명, 2021년 58,000명, 2022년 66,000명, 2023년 66,000명이므로 기본계획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을 세운 2023년에는 목표인원을 66,000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자활근로사업비는 46억을 감액 편성하였다. 자활근로사업비가 부족하면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를 받지 못하고, 이는 개별 수급권자 가구의 급여 삭감이나 수급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수급자가 노동을 꺼린다는 인식을 전제로 자발성이 아닌 조건부과를 매개로 “자활”을 강요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근로능력평가는 “자활”을 강요할 수 있는 수급자와 그렇지 못하는 수급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기능함으로써 처음부터 자발성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근로능력평가, 조건부과, 자활참여를 명목으로 한 노동 강요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5. 재산기준 현실화

제2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 따라 기본재산공제액이 인상되고, 주거용 재산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급지체계를 3단계[대도시(서울·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온 것이 4단계로 세분화되고[서울, 경기, 광역시·세종, 그 외],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이 급여별로 달리하여 완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기본재산액, 높은 소득환산율은 재산을 소진한 뒤에

야 기초생활수급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더 빈곤해질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본재산액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47.1%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⁹⁾

재산의 소득환산은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어떤 재산의 경우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처분했을 경우 빈곤이 가속화되거나 탈빈곤을 더욱 어렵게 한다. 특히 주거용 재산은 처분했을 경우 안정적인 주거 상실로 탈빈곤이 어려워지고, 주거급여 등 추가적 부담으로 공공부조 부담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 따라서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혹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하 거주주택의 경우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의 적용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 급등분을 일부 반영하여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인상하는 데 그쳤다.

한편 자동차에 대한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은 자동차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 당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200만대였으나, 2022년 기준 2500만대를 돌파(2명당 1대)할 정도로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되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생활편의와 공공시설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자동차가 필수재에 해당한다.¹⁰⁾ 자동차에 대한 100% 소득환산율 적용은 골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사치재 및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일

9)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22. 7)

10) 한은희.(2020).재산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신청탈락과 수급탈락의 현황과 시사점.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421-438.

반재산 소득환산을 적용과 비교해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가액 또는 배기량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 소득환산 대상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거나 일반재산환산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가 필수재임을 고려할 때 특히 대도심이 아닌 지역 거주자의 경우 일정 가액 또는 배기량 이하의 자동차는 소득환산 대상 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가 있다.

6. 발골이 아닌 보장

2014년 송파구에서 함께 거주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건 이후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으로 위기가구 “발골”을 강조해왔다. 발골대상 위기가구로 정보 부족 등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상정한다. 그러나 정작 취약계층을 발골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급여가 많지 않은 것¹¹⁾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도 위기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을 방증한다.

특히 절차적 문제로,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현재 거주 또는 체류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방법이 없다. 주거가 없는 홈리스들의 상황은 물론,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서대문구 모녀 사건으로 부각된 것처럼, 위기가구 중 상당수가 부채 등으로 인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 전국단위로 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체계 구축에 관한 제안¹²⁾은 귀 기울일 만 하다고 생각한다.

11) 함영진 외.(2023).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안적 고찰 - 취약계층 발골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함영진 외. 위의 글

한편, 2021~2022년 사이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2만4157명이 탈락했고(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44만원에 불과함), 생계급여를 신청한 사람 중 6891명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탈락했다(이들의 월평균 소득 역시 75만원에 불과함).¹³⁾ 2016년 1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7년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총 193만5499 가구 가운데 75만4453 가구(39%)가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신청에서 탈락했다.¹⁴⁾ 이들은 단순한 문의에 그치지 않고, 신청을 접수하여 재산·소득 및 부양의무자 조사로 나아간 점에서 대부분 실제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러 개인정보들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투망식으로 취합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차원의 문제 소지가 있는 하향식 발굴에 앞서, 적어도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이 수급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탈락한 원인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취약계층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결론

21세기 한국은 빈곤이 여전히 죽음으로 귀결되는 나라다. 부양의무자기준, 비현실적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오래전부터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는 부양의무자기준에 관한 내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실상은 본질적으로 “완화”에 해당하고, 그마저 의료급여에 적용되지 않고, 일부 예외만 두

13) “‘복지 사각지대’ 부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될까”. 2023. 1. 13.자 아시아경제 기사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11215212454417> 2023. 8. 29. 접속)

14) “‘수급 퇴짜’ 75만 가구... 가난마저 부정당했다”. 2023. 7. 5.자 서울신문 기사(<https://v.dau.m.net/v/20230705050106288> 2023. 8. 29. 접속)

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관된 논리나 기초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과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급요건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요건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다보니 최소한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 똑같이, 즉 경직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가난하다는 사실, 부양받지 못하는 사실은 모두 공공부조가 필요한 사람의 책임이 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은 앞으로 3년간 시행할 계획의 근거와 목표를 담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의견수렴은 정책형성에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되는 양 밀실회의를 고수함으로써 귀중한 기회들을 날려버렸다. 제3차 기초생활종합계획 역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반영되리라 기대하며 기록을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 대한 평가를 남겨본다.

발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정해야 할 것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변호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정해야 할 것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수급 신청 [주소지 없는 수급(권)자]

▷ 현황

- 과도한 빛 독촉 등으로 신분노출을 꺼리거나 주소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 일정한 주소지가 없는 노숙인의 경우 등에는 수급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신청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수급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¹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최소한 실제로 거주하는 구체적인 주소지를 밝혀야 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 2021년 말 기준 거주불명자 24만 4575명,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5만명 ⇒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수급자격 요건[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367)]

- 실제거주 요건 : 수급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법 제19조]에 따른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 지속거주 요건 :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수급 신청 [주소지 없는 수급(권)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방안 |

구 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인자활사실 거주자			노숙인
			주인등록실정자		주인등록 확인불가자 등	
			시설소재	타지소재		
관리 수단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거주	최소 1개월거주	-	최소 1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관리방법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	주민등록 번호 사회복지 전산번호	-
급여	생계	○	○	×	×	×
	주거	○	○	×	×	×
	의료	○	○	○	○	×
	교육	○	○	○	○	×
	해산	○	○	○	○	×
	장제	○	○	○	○	×
	자활 조건부과	○	○	×	×	×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 가능	현금/물품/ 분할지급 가능	-	현금/물품/ 분할지급 가능	이동식 긴급급여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369>

수급 신청 [주소지 없는 수급(권)자]

<해외 사례>

- (영국) 통합수당 신청자에게 일정한 주소가 없는 경우 가족·지인 주소, 호텔 주소, 주간보호센터, 지역의 직업훈련소 주소 등을 임시주소로 쓸 수 있음
- (미국) 생활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때 노숙인도 노숙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생활보조금을 받는 데 주소나 주거지 필요 없고, 서류 전달을 위한 우편물 배달지를 보호기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아일랜드) 우체국에서 노숙인이나 임시 숙소 거주자에게 개인 우편주소를 부여하고 사회복지급여 신청할 수 있게 함

[출처: 서울특별시(연구책임자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0. 12.) 이용, "[팩트체크] 미국 영국선 주소지 없어도 사회복지급여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22.12.8.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7140700502>]

▶ 거주지, 실제 거주지역이 없는 경우 수급 신청을 위한 개정 의견

- 주소지가 없는 수급(권)자에게 임시 주소지를 부여하여 수급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2017. 2. 24.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발의, 임기만료 폐기

개정 법률안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 ③ 주소지가 없는 수급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신청자가 수급실시를 희망하는 보장기관이 임시 주소지를 제공하여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현황

- 교육급여(2015년)·주거급여(2018년) 완전 폐지
- 생계급여 일부 완화 (연소득 1억 초과 또는 재산 9억 초과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

- 정의 및 원칙 : 정의(제2조), 급여의 기본 원칙(제3조,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
- 개별급여 요건 : 생계급여(제8조), 부양능력(제8조의2), 교육급여(제12조), 의료급여(제12조의3)
- 급여 신청, 조사 및 결정 : 급여의 신청(제21조), 신청에 의한 조사(제22조), 확인조사(제2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23조의2), 조사 결과의 보고 등(제25조), 급여의 결정(제26조)
- 보장비용 징수 : 비용의 징수(제4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생계급여 보장수준 강화

▷ 현황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

- 2023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1인가구 623,368원)
- 2024년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나, 경기불황 및 물가상승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전히 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개정 ⇒ 보장수준 강화 및 급여 대상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생계급여 보장수준 관련 법안 발의 현황 (21대국회)

연번	대표발의 (발의일자)	내용
1	신동근 의원 (2023. 7. 12.)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늘림
2	강은미 의원 (2022. 11. 11.)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
3	조수진 의원 (2021. 4. 30.)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00분의 35로 상향

생계급여 보장수준 강화

▷ 현황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으로 인해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 차감 지급, 소득증가로 수급자격 상실까지 발생 → 노인 50만명 중 6만명(12.3%) 기초연금 신청 포
- 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라는 기초연금의 취지 상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개정하여 기초연금법상 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 ㉠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생계급여 보장수준 관련 법안 발의 현황 (21대국회)

연번	대표발의 (발의일자)	내용
1	장경태 의원 (2023. 7. 12.)	기초연금액 중 100분의 5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2	강은미 의원 (2022. 11. 11.)	기초연금액 중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3	정춘숙 의원 (2020. 6. 26.)	기초연금 전액을 실제인정액에서 제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민주적 운영

▷ 현황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법 제20조) :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 (기준 중위소득은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
- 구성 : 위원장 및 위원(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 ⇒ 정부의 일방적 정책 집행 가능성, 정책대상자 요구 반영 의문
- 운영 : 본회의 및 소위원회 안건,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
-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 결정 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객관성 강화, 국민의 알 권리 강화 필요

▷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 의견

현행	개정 의견	참고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p> <p>㉞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p> <p>1.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p> <p>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p> <p>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p> <p>㉞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p> <p>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수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p> <p>3.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p> <p>4.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p> <p>· 시민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 필요. ex)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p>	<p>「국민건강보험법」상 재정운영위원회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급손저부 등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p> <p>- 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p> <p>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p> <p>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p> <p>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p> <p>-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p> <p>「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p> <p>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p> <p>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p> <p>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p> <p>-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의위원 중 선출</p>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민주적 운영

▷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정 의견 [강은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21, 발의연월일 2023. 6. 16.)]

-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국민연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의 경우 대부분 회의록 작성, 공개,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있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은 물론 개최 일시, 장소까지 모두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저해, 민주적 통제 불가

개정 법률안

제20조의2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의제, 제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표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회의록 작성 주체·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회의의 내용은 속기하거나 녹음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⑥ 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 내지 녹음기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일 익일까지 공개한다. 공개의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②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현황

시·군·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353-354)

- (1)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 (가) 사실상 국·공유지에 존하여 활용되고 있어 소유자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한 재산
 - (나)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경우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결정에 대한 사항
- (2)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 사항
- (3)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 통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부양의 거부·기피 및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사항
- (4) 급여결정·변경·증지와 관련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보고사항)
- (5)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 (6)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관련 사항 등
- (7) 한국해비타트 집짓기사업에 따른 상환금(부채) 인정에 관한 사항
- (8)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인정)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가)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제기하거나 이혼 전 속려기간 중인 상태인 경우
 - (나) 이혼 소송 전이나 배우자의 폭력, 학대로 인하여 도피하여 있는 경우
 - (다)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 (9) 타 소득·재산 항목에서 사실상의 변화 없이 근로소득 증가로 의료·주거·교육급여 탈락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급여 연장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현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356)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원칙
 - 특례수급(권)자 결정을 위한 회의는 사안 발생 시 개최, 필요시 서면의결, 소위원회도 적극 활동
 - 단, 연간 2회 이상은 대면 심의로 진행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 현황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공무원 및 민간인 수 비교 (2018)

	지생보 공무원	지생보 민간인
서울	73	94
부산	34	77
대구	21	67
인천	20	33
광주	2	0
대전	2	0
울산	21	35
세종	2	16
경기	103	198
강원	69	119
충북	45	86
충남	52	107
전북	45	81
전남	83	176
경북	106	153
경남	67	116

출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윤기현, 박규범, 현인희, 사회보장정보원(2019)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 현황

서울시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횟수

연번	자치구	2018	2019	2020	2021 (7월까지)	2022 (8월까지)
1	종로구	11	12	12	6	13
2	중구	11	11	12	8	4
3	용산구	12	12	12	7	9
4	성동구	12	12	12	12	10
5	광진구	12	12	12	5	0
6	동대문구	12	12	12	7	0
7	종방구	11	12	12	7	11
8	상복구	13	11	12	7	16
9	강북구	11	12	12	14	14
10	도봉구	11	3	12	7	1
11	노원구	11	12	12	7	8
12	은평구	12	12	12	7	9
13	서대문구	10	11	12	7	7
14	마포구	11	13	12	7	12
15	양천구	12	12	12	12	10
16	강서구	12	12	12	7	13
17	구로구	12	13	22	13	12
18	금천구	12	12	12	7	7
19	영등포구	11	12	13	7	8
20	동작구	12	12	12	7	7
21	관악구	11	14	19	14	17
22	서초구	12	12	12	7	11
23	강남구	11	12	12	7	9
24	송파구	6	12	10	6	8
25	강동구	19	24	20	11	11
	합계	290	304	324	206	226

출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 (2021. 1), 서울시 복지정책과, 국회의원(이종성) 요구자료
 지역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관련(2017~2021년 7월 말 기준 (2021. 8) 서울시 복지정책과 2022 1~8 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송부 (2022. 10.)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 개정의견

- 다수 민간 전문가가 논의를 통해 수급(권)자의 보장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수급 결정 절차 등의 독립성,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 필요
- 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을 특정하여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최소 개최 횟수 명시

현행	개정 의견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p> <p>㉔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p>㉕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㉖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p> <p>㉔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명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p>㉕ 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㉖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㉗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조건부 수급 폐지

▷현황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자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조건 불이행시 급여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지
- 조건부 수급 제도는 헌법 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 공공부조의 최우선 목표인 최저생활 보장을 중점으로, 자활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스템 개선 필요 (자활근로 참여시 추가 급여 지급, 자활근로 소득공제 확대 등)

▷개정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 조항(제9조제5항) 및 조건 불이행시 급여 변경 조항(제30조제2항) 삭제, 조건부 수급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근로) 규정에 제3항 및 제4항 신설하여 원하는 수급자에게 자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 제3항: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 제4항: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1항을 개정하여 원하는 수급자에게 자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 제1항: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지원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규정에 제4항 신설하여 자활근로 급여 소득공제 확대
 - ▶ 제4항: 제15조 자활근로 참여로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근로) 규정에 제3항 및 제4항 신설하여 원하는 수급자에게 자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수급자 범위 확대(외국인의 경우)

▷현황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였어도 자녀가 없거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수급 대상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 UN주거권특별보고관(2018)은 한국정부에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와 주거급여를 제공할 것을 권고,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제도는 'UN사회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가능한 빨리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개정의견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각 호의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포함 개정(2019년, 기초법공동행동 및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제안)

현행	개정의견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3. 제32조 각 호의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4.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자 5.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p>*난민의 경우 난민법 제32조에 의해 수급자로 보호받게 됨</p>

[출처: 권영실, "이주민 주거권의 보장 방향", 유연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19. 4. 29.)]

발표 3

주거급여 제도의 개선과제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

1. 선정기준 상향 및 주거비 지원 대상 확대

- 국토교통부는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을 통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2022년부터 기준을 상향하기 시작함(관계부처합동, 2020)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2년부터 상향되기 시작해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될 계획임
-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는 2018~2022년 94.0만가구 → 134.5만가구로 증가함¹⁵⁾
 - 같은 기간 일반가구수 대비 수급 비율은 4.7% → 6.2%로 증가함
-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상향한 이후에는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원가구(부모) 소득·자산까지 심사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했던 사례가 있음
 - 원가구 소득·자산을 심사하는 것은 부양의무자기준의 부활이었음
- 차상위계층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비 지원을 차등지급하는

15) 사회보장정보원. 복지통계.

방식으로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는 주거급여와 다른 방식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원이 종료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상시 제도로 편성해야 함

2. 보장수준 현실화

- 국토교통부가 보장수준 목표 설정을 위한 시장임대료 계측 시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정의한 것과 다름없음
 - 최근 선정기준이 크게 후퇴한 영국 주거수당(Local Housing Allowance)조차 수급가구가 거주할 만한 거처를 임대료 하위 30%에 해당하는 거처로 설정함
- 국토교통부가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계측한 1급지 목표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면적 수준의 시장임대료에 비해 여전히 낮음(표 1)
 - 2021~2022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1~3인가구 최저주거면적 수준의 평균 임대료를 추계함. 보증금 1억원 이상은 제외했고, 보증금전환율 4%를 적용했으며 가구원수별 최저주거면적의 $\pm 3\text{m}^2$ 까지 표본에 포함함
 - 1급지 목표 기준임대료는 실거래가보다 1인가구는 6.7만원, 2인가구는 9.0만원 낮음. 3급지 1~2인가구의 목표 기준임대료도 실거래가보다 낮음
- 현재 1급지, 3급지의 기준임대료는 시장임대료와 큰 격차가 있는데, 목표 기준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함
 -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1급지 목표 기준임대료를 계측치의 90%만 적용하여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시장임대료조차 반영하지 않음
 - 2024년 1인가구 기준임대료가 1급지는 34.1만원, 3급지는 21.6만원인데 실거래가와 격차가 10만원 내외로 커 목표 기준임대료를 상향해야 함

60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단

- 국토교통부가 사용하는 임대료 가구균등화지수에 의해 1~2인가구 기준 임대료가 과소추계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함

[표 27] 목표 기준임대료와 실거래가 비교

(단위: 만원)

구분	목표 기준임대료(A)			실거래가(B)			차이(A-B)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서울(1급지)	40.1	45.0	53.5	46.8	54.0	55.7	-6.7	-9.0	-2.2
인천·경기(2급지)	34.2	38.2	45.6	29.2	35.4	38.0	5.0	2.8	7.6
광역시·세종·특례시(3급지)	28.8	32.2	38.4	31.2	34.9	35.0	-2.4	-2.7	3.4
기타 지역(4급지)	25.9	29.0	34.6	22.8	30.7	32.4	3.1	-1.7	2.2

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3); 국토교통부, 2021~2022, 실거래가 자료.

주: 1) 전용면적은 가구원수별 최저주거면적 $\pm 3m^2$, 보증금 1억원 이상 제외 및 보증금전환율 4% 적용.

2) 음영 표시한 부분은 실거래가보다 목표 기준임대료가 낮은 구간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선을 초과하여 자기부담분을 부과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40% 내외로 추정됨(국토교통부, 2019)
 -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 기준선을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의 30%로, 임차급여에서 차감됨
 - 예를 들어 2023년 소득인정액이 83만원인 1인가구는 생계급여 기준선 초과분(83만원-62만원=21만원)의 30%인 6.2만원이 자기부담금으로 책정됨
- 소득인정액 기준 자기부담분을 폐지하여,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료가 낮은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면서도 급여가 차감되었던 수급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주거급여의 자기부담분 제도는 주거 과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적어도 부과기준을 수급가구의 소득이 아닌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생계급여 기준선 미만인 가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지출 보전방식의 현금성 급여에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있고 실제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움
- 최저생계비 항목으로 포함되었던 (주거)관리비가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임(관계부처합동, 2020)
-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는 임대료보다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가 적지 않음
 - 영구임대주택은 표준임대료 제도로 인해 수급가구의 임대료는 대부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내에 해당하지만, 주거급여로 지원되지 않는 관리비는 생계급여 또는 적은 소득에서 충당해야 함
 - 기초생활 수급가구 비중이 높은 영구임대주택은 주택개량과 주거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수급가구의 관리비 부담 여력이 낮아 공공주택

사업자가 관리인력이나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주거급여로 수급가구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거처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설정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공표하도록 함. 법 제2조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지역난방식인 150세대 이상인 주택을 의미함
 -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저층 주거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고지되지 않고, 개별사용료 외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부터 관리비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적은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관리비 지원은 설득력을 갖춤
 - 시작 단계에서 관리비 지원 항목은 전용면적에 따라 책정되는 일반관리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리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자가가구도 대상에 포함해야 함

3. 주거품질 규제 및 주택개량 지원 확대

-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약 16%는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열악한 거처에 거주함(관계부처합동, 2020)
 - 특히 1급지(서울)의 최저주거면적 미달 비율은 30%로 전체 주거급여 수급가구 평균에 비해 높음
 -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도 7~8%로 적지 않음
- LH가 수행하는 주택조사는 실제 거주 여부, 즉 부정수급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가까움. 프랑스, 미국 등에서 보장기관이 수행하는 수급권자의

거처상태 조사와는 성격이 다름

- 프랑스의 APL(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등 주거수당 제도는 수급가구의 거처가 안전과 건강에 관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함¹⁶⁾
 - 주거수당은 거처의 종류나 임차형태로 수급권을 제한하지 않지만 수급가구의 거처가 최저주거기준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최저주거기준은 창문, 화장실, 식수, 전기 등 필수 설비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됨. 면적 기준은 1인가구는 9㎡, 2인가구는 16㎡ 이상으로 설정됨
- 미국은 공공주택청이 주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s) 신청가구의 거처에 대한 주거품질 평가를 수행함(한국도시연구소, 2020)
 - 공공주택청은 건강, 안전, 생명과 관련한 항목을 평가하는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바우처 지급을 중단하거나 급여를 삭감할 수 있음
 - 가구원수 변경에 의해 면적(과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주하도록 지원함
- 한국 주거급여 제도 역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여 수급가구가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함
 - 비적정 거처 임대인 다수는 임차인이 수급가구인 점을 인지하고 임대료를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만큼 꾸준히 인상해왔음
 - 공적 재원이 ‘빈곤 비즈니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다만 주거품질 규제가 수급가구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자가 가구의 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수선유지급여는 2020년 이후 동결됐으며 2024년에도 인상되지 않음

16) CAF(Caisse des Allocations Familiales), Allocataires(<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logement/les-aides-personnelles-au-logement>).

-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기준은 5년째 동결됨
- 노인가구(만 65세 이상)에 대한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비도 2018년 이후 50만원으로 동결됨
- 수선유지급여에도 생계급여 기준선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자기부담분을 부과하는 장치가 있는데, 주택가격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조치임. 소득이 부족한 가구는 급여 신청조차 포기할 우려가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주거약자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주택개량 지원 확대가 필요함

4.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시장 규제 강화

- 현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하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축소함(홍정훈, 2022)
 - 임대유기기간이 20년 이상인 유형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했을 때, 전년 대비 2023년 장기공공임대 출자 예산은 1조 2,288억원 감액(-19.1%), 용자 예산은 2조 7,512억원 감액(-30.1%)됨
 - 박근혜 정부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중상위계층 편향적인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함
- 영국은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축소 →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 증가 → 민간임대시장 규제 완화 →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주거수당에 소요되는 재정이 증가하자 대상을 축소하는 개혁에 착수함(Wilkinson & Ortega-Alcázar, 2017)
 -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하면서 주거급여 제도를 확장한 한국과 달리, 영국은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로의 개편을 통해 주거수당을 축소함

- 독일이 2005년 ‘하르츠(Hartz IV) 개혁’을 통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보조금을 대폭 축소한 것은 사회주택 비율이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음
 - 독일은 하르츠 개혁 전후로 주거보조금 수급가구 비율이 약 9%에서 약 2%로 대폭 감소함(문수현, 2022)
 - 독일은 타 유럽 복지국가에 비해 사회주택 재고가 적은 데다, 민간임대 시장 규제가 완화되어 임대료 상승률이 높았음. 이는 2015년 ‘임대료통제법(Mietpreisbremse)’ 도입 배경이 됨(문수현, 2022)
- 당초 국토교통부는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7.1만호를 신규공급(사업승인)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0.8만호에 그침(국회 예산정책처, 2023)
 - 현재 최저소득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인데, 윤석열 정부는 폭압적인 예산 삭감도 모자라 계획된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은 것임
 - 반지하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허구에 가까움
- 2024년에는 삭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여,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해야 함
 - ‘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확대는 대통령 공약이었음
 -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겐 우선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함
- ‘임대차 3법’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민간임대시장 규제는 점차 강화해야 함
 - 영국과 독일 사례를 고려하면 규제 완화가 국가 재정엔 큰 손실을 입히게 됨

5. 전달체계 개선

- LH가 주거급여 신청 가구의 주택조사를 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

임대주택을 가장 큰 규모로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임

- 현재는 주거복지센터 등 민간 기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다시 방문하여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받음
 - 현행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반증인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거처 상태도 열악한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배제했다는 뜻임
- 주거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때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지,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안).
국토교통부, 2019, 제2차 주거급여 소위원회.
국회 예산정책처, 2023,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수현, 2022, 주택, 시장보다 국가, 이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회의자료).
한국도시연구소, 2020,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연구용역.
홍정훈, 2022,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토론회.
Wilkinson, E. & Ortega-Alcázar, I., 2017, A Home of One's Own? Housing Welfare for 'Young Adults' in Times of Austerity, *Critical Social Policy*, 37(3), 329-347.

2부

기초법시민평가 토론회

토론1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김종언 | 수급신청자

토론2 소득을 보충할 권리와 존엄을

차재설 | 기초생활수급자

토론3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현실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김세은 | 강북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

토론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유지은 사무관

참고 시민평가단 결과 및 권리선언문

토론1.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김종연 || 수급신청자

나는 원래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했는데 아이엠에프 이후 직장을 잃었다. 사출일을 할 때는 나름 기술자였지만 이제는 기계화가 다 되어서 사출 기술자를 뽑지 않는다. 매일 집에 있다보니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해서 지방에 일이 있어서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온 뒤 서울역에서 노숙을 시작한게 2004년이였다. 이후에 자활일자리에도 참여하고 하고, 홈리스행동을 만나 매입임대주택에도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서울시의 노숙인 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다. 어떤 일자리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2016년, 서울시에서 기업의 후원으로 대학생 아이디어를 공모, 실현시켜주는 프로젝트로 '별일인가' 노숙인 운영카페를 만들었고, 특별 채용되었던 적이있다. 카페는 서울시와 기업의 홍보용으로 반짝 이용되었고, 금방 문을 닫았다. 어렵게 딴 바리스타 자격증은 더이상 써 먹을데가 없었다.

노숙인일자리나 공공근로보다 차상위자격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면 채용기간도 길고 월급도 더 많을거라고 동료에게 얘기를 듣고 공공근로가 끝나고,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지역자활센터에 찾아갔다.

2018년 5월부터 삼개월동안 교육을 받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다. 며칠 뒤 학교 청소 일자리가 생겨서 취직을 하게 됐다. 학교 청소는 힘이 꽤 드는 일이었지만, 반장님과 동료들과 함께 이따금 회식도 하고 매일 출근할

곳이 생겨 기분도 좋았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더 이상 학교 청소가 필요 없어졌다고 했다. 자활센터에서는 급하게 다른 일을 만들어줬다. 방역업체였다. 방역복을 입고 소독약을 치는 것인데, 원하는 시간에 해줘야하는 일이라 새벽에 아직 사람들이 오지 않은 사무실을 소독하기도 하고, 한참동안 기다렸다가 다른 사무실에 가서 소독을 하기도 했다. 대기 시간이 길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할만했다.

지역자활센터일자리는 3년동안 참여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만 연장된다. 2022년 6월, 5년의 참여기간이 끝나버려서 22년 12월까지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다. 6개월 동안 일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한 곳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고, 모아놓은 돈을 까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몇 개월지나서 구청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지원받는 기간에 기간제 일자리에 합격해 한 달을 다녔는데 상사의 괴롭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다시 긴급생계비도 다 쓰고 몇 달동안 소득이 끊겨서 방세까지 밀리는 힘든 상황에 부딪혔다. 다시 희망온돌에서 세금미납으로 지원을 요청했고, 주거급여와 자활센터 일자리도 신청했다. 어제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주거급여는 주겠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60개월동안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데, 이미 계속 노력해봤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일을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생각할 때 나는 돈을 벌 수 있다면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십년 넘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십수년 전 공공근로나 자활근로가 번번이 종료되고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받았던 대출을 아직까지 갚고 있다. 500만원을 빌리고 꽤 오랫동안 빚을 잘 갚았는데 일거리가 없어진 이후 또 빚을 갚지 못했다. 몇 해 갚다 못 갚다를 반복하며 방치하고 보니 지금은 이자가 붙어 2000만원이 되었다. 만약 계속 일할 수 있었다면 수급신청이 필요 없지만, 일할 곳이 없다면 자활일자리라도 계속 보장해주면 좋겠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5년도 짧다. 더 길어야 한다.

지난 겨울에 가스비가 66,130원 날아왔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4만 원 넘는 가스요금을 내 본적이 없는데, 자활일자리가 끝나자 할인 감면도 끝나서 66,130원이 나온 것이다. 평소 같으면 낼 수 있었겠지만, 실업급여도 끝나고 새 일자리도 찾지 못한채 수개월을 살고 있었던터라 날벼락이었다. 결국 연체가 시작됐고, 올해 봄에 긴급지원을 받아서 밀린 가스요금을 낼 수 있었다. 나에게 일자리와 월급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단지 한 달 봉급뿐만 아니라 가스요금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친절한 제도가 되면 좋겠다. 다들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런 것들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하고 도와준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권리라고 하는데 나는 권리같은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하고 싶다. 나는 항상 차상위 계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했는데, 어머니에게 집이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탈락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나도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어머니 집 때문에 수급자도 되지 못한다면 가족들에게 더욱 면목이 없을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하루 빨리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토론2.

소득을 보충할 권리와존엄을

차재설 || 기초생활수급자

저는 쪽방 주민 차재설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오랫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점이 무엇인지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수급자가 되면 수급비로 딱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많지 않더라도 돈을 좀 벌 수 있으면 좋은데 돈을 벌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불안합니다.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온다면야 수급을 안 받아도 되겠지만 우리는 돈을 번다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버는 돈도 일정치 않기 때문입니다. 30퍼센트를 공제해준다고 하는데 30퍼센트가 아니라 수급비랑 다 합쳐서 백만원 이든 백오십만원이든 넘어가기 전까지는 돈을 벌어도 된다, 돈이 생겨도 된다, 이렇게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65세가 넘어서 자활사업에 안 나가지만, 몸이 좋고 활기가 있는 날은 조금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축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좀 만들 수 있게끔 해야하는

데, 수급받는 사람은 아무 것도 못하다보니 수급자가 되면 병자 아닌 병자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금이라도 해야 미래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제가 사는 방은 몇 년간 같은 곳이었지만 4년 사이 월세는 21만원에서 3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35만원으로, 2년 뒤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주거급여를 올린다지만, 주거급여가 오르는 만큼 건물주는 월세를 올립니다. 월세가 오르는 것을 보고 있으면 건물주들은 앉아서 호화스럽게 사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이 되면 넓은 방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 가려면 필요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쪽방엔 부엌도, 화장실도 없는 대신 냉장고도, 세탁기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그런걸 다 사야하는데, 수급비로 이사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친구들 중에서는 가스비나 전기세,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다시 쪽방으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도세, 가스비 등을 내려면 적어도 10만원씩 나온다는데 그러면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동자동에서 사는 저는 최근 서울시에서 식권을 주는 것으로 밥을 먹는데, 이 쿠폰이 아니었으면 살기가 더 어려웠을겁니다. 쪽방은 살기 힘든 곳이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니 좋은 점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동자동 쪽방 공공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거급여만 줄 것이 아니라 쪽방 주민들이 모여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공공개발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저런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마지막엔 마을을 청소하는 근로유지형 자활에 참여했고, 지금은 65세가 넘어 참여하지 못합니다. 보람도 있고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 본 저의

평가입니다.

첫째, 임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는 것인데 한달 백오십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활참여비와 급여를 합해 작년에 백오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둘째,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수급비만 받는 것보다는 백만원을 벌 때가 나왔는데, 65세가 넘어가자 일자리에서 탈락했습니다. 일을 안 하니 근로장려금 같은 재미도 사라지고 사는 의미가 줄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이사를 갔더니 그 동네에 자활일자리가 없다고 수급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개수가 적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3개월 6개월 참여시키고 그만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이 어떻게 3개월만에 우뚝섭니까? 책상머리 생각입니다.

셋째, 일에 보람이나 여유를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동자로 일할 때는 휴가도 있고 작업복도 있습니다. 자활사업에는 휴가도 없고, 조끼 하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소일을 할 때 몇 년 전에는 안전화를 주었는데, 이년 전부터는 안전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안전화나 마땅한 도구도 없이 일주일에 칠십, 팔십봉지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겨울에는 염화칼슘도 뿌리고요. 작년에는 주민센터에 갔다가 서울시가 시행하는 저소득 노동자 휴가지원사업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해당하나 물어봤더니 수급자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노동하는 저소득층인데 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차단할까 답답했습니다.

수급자들 중에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만 봐도 무섭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참고말지 하면서 포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진짜 살게끔 만드는게 뭔가,

74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단

그런 걸 고민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대로만 살아라 하는 제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토론3.

기초생활보장수급비 현실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김세은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북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소속 사회복지사 김세은이라고 합니다. 주거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분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만나는 수급자분들의 중 몇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 수급비 책정이 필요합니다.

중장년 1인가구 이○○님은 2021년 6월 강원도의 중소 도시에서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살게 된 곳은 지인이 거주하던 곳으로 보증금 100만원/월세 30만원의 다가구주택 반지하에서 생활하셨습니다.

다행히 2년을 넘기지 않은 2023년 5월 재개발임대주택으로(아파트) 이주했습니다. 매월 20일에 입금되는 생계비로 공과금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요금, 재개발임대주택에서의 관리비 등의 고정지출로 한 주에 사용 가능한 금액은 7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료비, 교통비, 식재료비가 계속 올라서 지인을 만나 밥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면, 당장 다음 주부터는 지출을 줄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계획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은 사회적인 고립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로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님은 중증장애로 40만원 가량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니 이 정도의 가계가 운영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 몇 개월은 건축재정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은 나은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님이 현재 지원받는 금액은 생계비에 장애연금을 포함해야 2023년 1인가구 중위기준소득 50% 정도인 100만원이 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최소한 숨통은 트인다고 이○○님은 말했습니다. 조금이지만 저축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아주 가끔은 짧은 여행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이 더해져야 할까요?

토론회를 앞두고 이○○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사람은 누구나 사람과 어울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혼자일 때가 있지만, 생계비가 없거나 부족해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라고..

◎ 수급에서 자연스럽게 탈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로소득공제의 범위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님은 한부모가정으로 정부지원을 받다가 2022년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1,036,847원의 수입으로 공과금과 더불어 대학생 자녀의 책값이며 교통비, 식비 등으로 지출하면 남는 돈은 40만원 이하로 남습니다. 대부분 식비로 지출되고, 남은 부분은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것과 비급여 의료비 지출로 채워졌습니다. 대학생 자녀는 음악 관련 전공자로 연습실을 빌리기 위해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수급비가 깎여서 나오고 구청에서는 수급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먹고 살려면 준비해야 할 게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살게는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고 울먹이며 말씀하시는데 드

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김○○님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이 심해서 왼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희미하게 보이는 수준입니다. 주로 김○○님은 망막 주사를 접종하는 일과 몸의 여기저기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가는데 비급여 항목이 나오는 것이 우려되어 병원 진료를 미룰 때도 있습니다.

미성년이 대학생이 되면 책값이며 교통비, 식비 등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데, 중고등학생 때에 비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소득 활동을 하면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다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기준선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최소한의 돈에 생활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님의 경우처럼 필수적인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소득 활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상한선과 비율을 높여서 자연스러운 탈피를 유도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 공공임대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담되어 입주를 포기하거나 주거 유지의 어려움에 처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현실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간혹 입주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최○○님 사례입니다. 가정폭력으로 두 자녀와 집을 나오게 된 당사자분은 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게 되셨고, 재개발임대아파트로 주거상황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두 자녀 중 한 명의 자녀가 정신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돌보느라 국가에서 주는 수급비 외에는 경제적 여력이 전무 한 가구였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아서 월 임차료를 감당하고 있으나, 생계비로 겨우 생활하는 가운데 관리비 연체로 어

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급비 이외에 경제적 여력이 없고 생계비에서 관리비를 별도로 해결할 수 없어 관리비가 계속 연체되었습니다.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미포함되었기에 주거급여로 관리비 연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관리비 연체로 퇴거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당사자분의 어려움은 센터에서 다른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해결되었습니다. 주거급여에 미포함된 관리비를 낼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구의 경우 관리비 연체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급여에 관리비까지 포함하는 현실적 대안이 절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님은 SH매입임대에 선정되었으나 입주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이○○님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몸이 아파서 조건부수급임에도 근로를 유예하고 생계급여로만 생활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주거사다리지원사업을 신청, SH매입임대 선정되었으나, 1인가구 주거급여를 넘어서는 30만원 후반대의 월세가 부담되어 결국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생계급여비 62만원에서 부족한 주거비를 지출하고 나면,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고시원을 벗어나고 싶으나, 이후의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평 공간의 좁디 좁은 고시원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겠다는 꿈은 그렇게 꺾였습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이 높게 임대료를 책정하여 주거급여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수급자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기에는 매우 미미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한다는 것에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더불어 살기 위해서 수급자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민의 삶, 현실을 반영한 수급비 인상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토론4.

정준섭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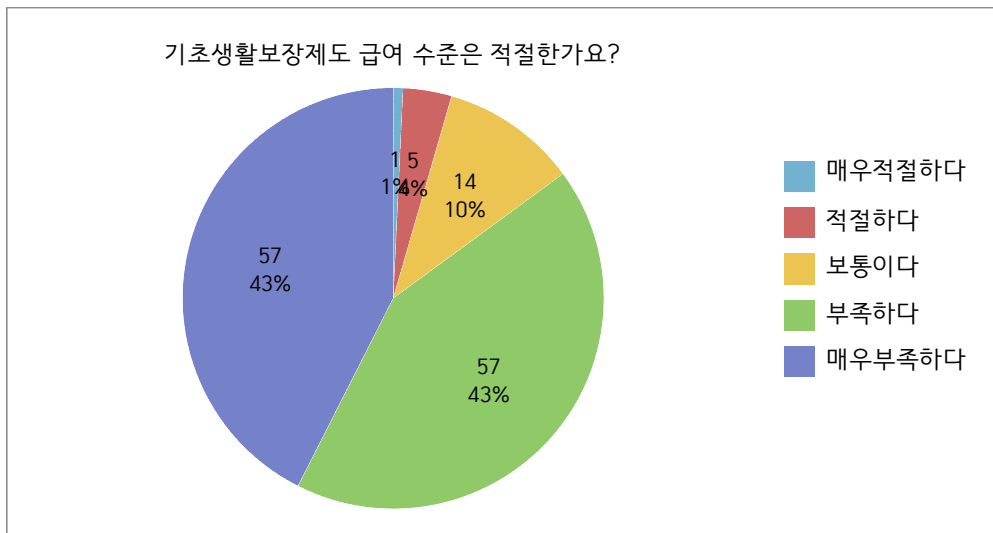
참고

기초법 시민평가단 설문결과 & 권리선언문

0. 응답자 현황

- 수급권자 및 사회복지노동자를 중심으로 온, 오프라인으로 설문 진행
- 온라인 설문 응답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에서 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작성
- 총 134명의 응답자가 응답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준은 적절한가요?



○의견

①충분하다는 의견

- 어차피 받아서 넉넉하게 쓸 수 없다. 모아서 나눠서 써야하는 것이다. 노인들은 쓸 돈이 많지만 다 충족시킬 수 없다.
- 다른 분야(의료.생계물품.주택)도 지원을 받으므로
- 검소하게 살기엔 충분하다

②부족하다는 의견

▶물가 인상을 감안해야 한다

- 물가가 올라서 마트나 시장에서 몇 가지 고르면 1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교통비도 오르고 현 물가 체계에서는 부족함을 피부로 체감한다.
-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고정된 수급 급여로 생계의 어려움과 모자란 생계를 보충할 수 없는 환경 여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 서울시 기준 30만원 터무니 없이 적다. 이러한 금액으로는 서울시 내에 안전하고 살만한 적정주거지를 구할 수 없다. 또한 생계급여는 말할것도 없이 터무니 없다. 최근 물가나 고정지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보인다.
- 물가가 너무 올라 야채나 과일 사먹기 어렵다
- 모든 것이 물가가 올랐는데 우리는 물만 먹고 살수 있다
- 살아보면 아는걸.

▶병원비 및 다른 지출때문에 들어서 수급비로 부족하다

- 의료비의 비급여항목, 물가인상, 서울외.지역의 주거비,에너지비용 등을 감안하면 부족함
-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비보험 품목) 부족하다.
- 먹는 것이 한달 2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눠쓰기가 어렵다. 병원가는 차비도 부담스럽다. 전화비도 내야하고. 우리도 여러 군데 써야한다. 다 따지면 62만원으로는 부족하다. 저축도 할 수 없다. 조금 올라야한다.

▶제도의 문제점

- 가상 공제항목이 많아 실 지급액이 매우 적음
- 그돈 받고 살수가없다. 그리고 탈수급을 위해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안된다. 그러니 일을 안하고 그냥 산다
- 어머니가 기초수급자인데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수급비가12만원 밖에 안나와요. 노령연금,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수급비 받는 거와 같은 금액이 됩니다. 이것으로 요양병원비는 부족하여 수급비로는 부족한것 같습니다.

▶주거급여의 부족, 월세 및 공과금 과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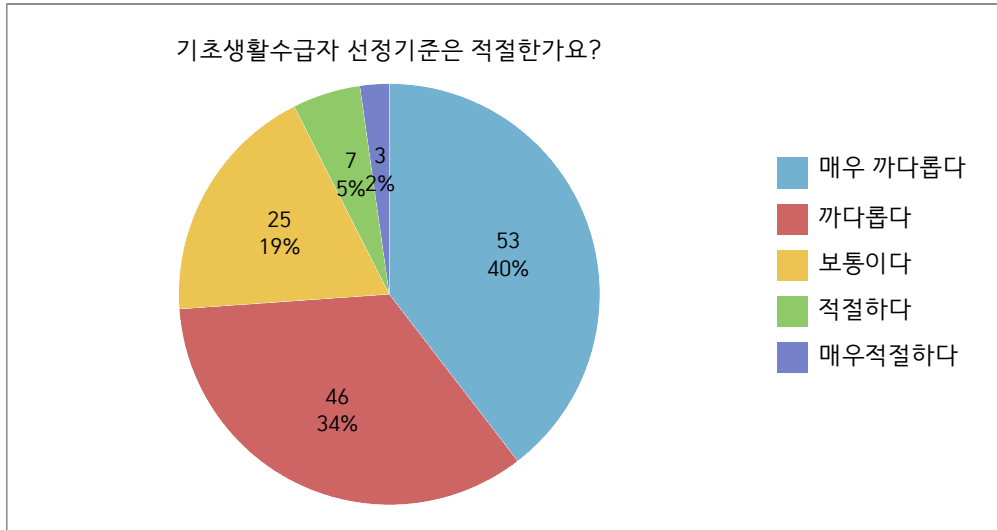
- 겨울에 난방비 같은 것이 부족하다.
- 고시원비가 30만원이었는데 월장이 바뀌더니 갑자기 4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 주거와 그 관리비에 들어가는 기본비용만으로도 금액을 넘어선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인 금액이다. 저 비용은 결국 주거를 갖춘 임대인에게 돌아갈 비용이라고 본다.
- 방세가 주거급여 수준보다 매우 비싼곳이 많다.
-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주거급여금액이 넘어서는 월세금액이 많기에 일상생활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 주거비에 관리비나 에너지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전기세 도 시개스비가 부담됩니다.

▶낮은 급여로인한 영향

- 급여수준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와 일상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 생계비로 월세를 보충하거나, 병원비나 기타 비용을 충당하면서 생활비가 바닥이 나서 생계비를 받는 날 부터 마이너스 한 달을 시작하는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를 들었다. 생계비 60여 만 원이라면 사회적 관계나 약간의 문화생활도 하지 못하고 아무 문

- 제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 집에서 먹고 자고 일밖에 할 수 없다.
-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생존을 이어나갈 정도의 급여만 주어질 뿐입니다. 취업과 자립,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급여와 조건이기에 자립을 포기하고 당장을 버텨내는 것을 목표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활능력 확보에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연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하루 30일 기준으로 2만원 남짓한 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특히 몸이 약하고 체력이 약한 분들이 근로무능력을 인정받아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분들이 건강해지 지기 위한 최소한의 식재료를 구매하기에도 사실상 부족한 금액이고 또한 몸이 안좋아서 세끼를 챙기기 위한 조리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의 금액이 한끼를 위한 식사로 지출됩니다. 일반생계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이 오히려 다소 침해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는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이라고 나오는데이는 당장에 식비의 문제와 생활필수품 비용으로 잠식되어 건강관리는 고사하고 반죽음 상태가 아니면 못가는 곳이 병원이고 문화적인 생활은 대단한 사치여서 금전적문제와 더불어 마음의 여유조차 갖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소액이지만 저금이라도 할라치면 그저 연명하는 삶 생존적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 차단하고 먹는거 줄이고 밖으로 잘 안 나가고 이 모두가 쪼개지는 삶의 궁핍함이 만들어 내는 삶의 분절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적절한가요?



○의견

①적절하다는 의견

- 그냥 뭐 보통이라 생각합니다.
- 까다롭긴 하지만 선정 기준을 낮추면 세금이 늘어날 것이 우려됨
- 까다롭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상황보더니 잘 처리해줬다.
- 다시서기랑 같이 신청해서 어렵지 않았다. 나이가 차서 괜찮았다.

②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정보의 부족, 제도의 복잡함

- 정보부족, 변경된 제도의 홍보부족, 신청주의 등이 지속적인 사각 지대를 만든다
-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제도가 까다롭다. 담당 행정직원들의 이해도 부족.
- 나랑 똑같이 수급받는 사람들은 나보다 5만원씩 더 받는데 나는 못 받고 있다.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봐도 답을 안해줘서 답답하다. 똑같이 영구임대 혼자 사는데 왜 다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 까다로운 기준, 서류요청 많음

-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각종 이해관계로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산이 재산기준에 맞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해 방치되어 버거운 삶을 이어가기도 하고, 불분명한 기준(근로능력 미약 등)으로 선정 여부를 예상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에도 부양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 요즘 콜센터 주5일 4시간 짜리 근무하는 곳의 월급을 보면 주거급여 수급대상 기준보다 살짝 더 많은 금액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기준에서 근로무능력자 판별 기준이 여전히 까다로워서 몸이 아픈데도 공공근로를 해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사망으로 가족의 수가 줄어들면 기준 소득이 낮아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깎으려고 한다. 동사무소 구청 직원 다 마찬가지.
- 피아노 학원을 하다 IMF때 학생이 모두 끊겼다. 엄마들이 예체능부터 끊더라. 쥐고있던 돈은 모두 쪼개지고 겨우 지하방 연을 정도만 됐다. 신청할때 서류확인을 너무 많이 하더라.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을 많이 했다.
-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수급자가 되지만 조금만 재산을 갖고 있어도 수급자가 안됩니다
- 수급자가 꼭 되어야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
- 수급자로 사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급자도 되지 못한 어르신들은 수급자조차 부러워하며 살게 됩니다. 실제 수급자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도 많아 정부가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갈등을 만들지 말고, 어려운 사람 대부분에게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 기준에 안 맞고 부양의무자 있으면 잘 못 받는다. 인연이 안 닿는데도 못 받는 경우 있음.
- 자식있어도 부양 못 받는 사람 많은데...수급 못받아서 고통스러움
-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 된다고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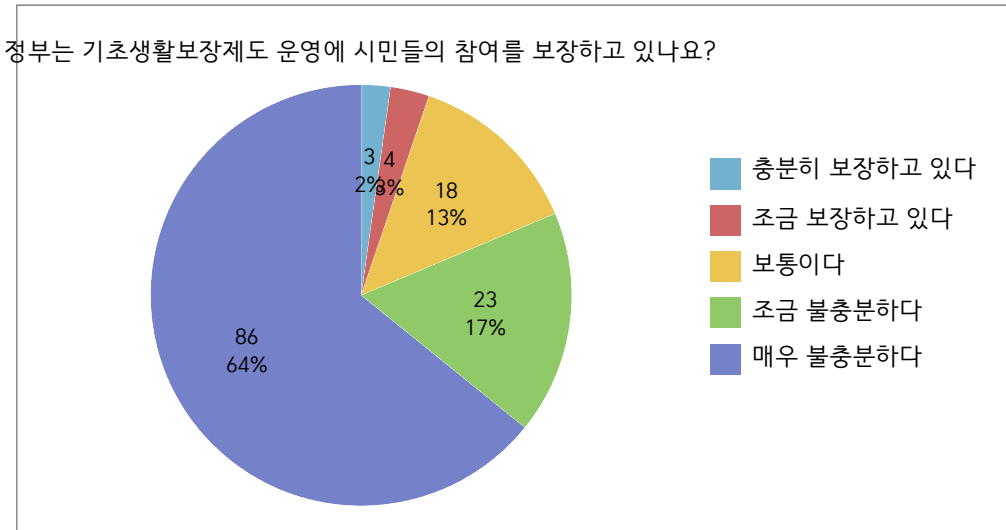
- 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로 시설아동 중의 하나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거액의 재산을 남겼다는 이유로 시설에 거주해야만하는 상황임에도 탈락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잡혀진 재산이 많다고 해서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가혹합니다.
- 1인가구 기준.. 거기에 맞추려면 그럼 장애인은 알바도 할 수 없습니다. 단돈1만원이 기준에 넘어가도 탈락인데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은 어찌 해야합니까?

▶근로능력평가

- 몸이 아파서 일도 하지 못하고 조건부 수급도 안되어 수급자 나이 기준인 65세를 기다리는 사례들이 있다.
- 구직이 힘든상황에서 근로능력만으로 소득이없는사람을 평가하는건 현실적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 지인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데 근로능력이 있는지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 주변에 수급이 안되어 안타깝게 생활하시는 분을 여럿 보았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병원에서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어도 퇴짜맞기 일쑤다.
- 수급자로 선정 되기가 어렵다. 질환이 있어도 선정 되기가 어렵다.한 가지로는 안되는거 같다

- 아파도 나이를 따져 못되는 수가 있다. 사람 병은 생각 안하고 걸만보고, 나이만 보고 판단하니까 안된다.
-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3.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나요?



①보장하고 있다는 의견

- 현재 정부의 참여 보장은 적절하다
- 정부에서 관심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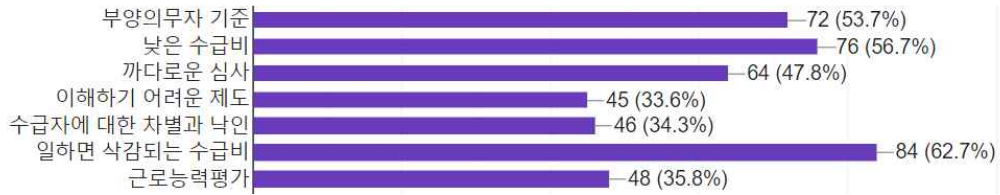
②불충분하다는 의견

-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준조차 모호합니다. 기준도 무엇도 제대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결정할때도 노동계 위원을 위촉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때는 중생위에 수급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줄 위원이 위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나요..?라고 반문하고 싶네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일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참

여하여 의견들이 반영되었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서요.

- 당사자들의 호소는 반복되는데 당사자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통로가 전혀 없다.
- 참여할 기회가 있는지, 있다면 참여에 대한 정보가 왜 부족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조사를 통해 이루어 지지 않음
- 참여를 요청하는 것을 딱히 본 적이 없다.
- 궁금해서 동사무소 가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어쩔수 없다 한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항의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말도 안한다. 동사무소 직원한테는 미안하지만 직원 아니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나.
- 의견을 수렴을 안해준다. 안된다는 게 너무 많다.
- 의견을 잘 안들어준다.
- 수급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적게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처음 듣는 이들도 상당수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이에 대한 문외한들이 의외로 많다.
- 제도 운영은 공급자 중심으로 되고 있다고 보기에
- 위원회의 구성에 시민과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합니다
- 정해서 통보하는 식이다
-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와 단절된 채인데도 적극적인 제도 안내가 없어 신청조차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극적인 제도 안내가 절실합니다.
- 시민들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세상입니다.
- 자기들끼리 정하는거지 당사자들 말은 들어보지도 않는다.
- 내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안 된다고만 합니다
- 제도가 어떤지 제대로 설명 들은적없다

4. 현 제도에서 가장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을 골라주세요 (복수 응답가능)



○기타의견 (각1)

- 부정수급
- 주거문제
-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수급비에서 삭감하는 문제
- 조건부수급이 되어도 일자리 연계가 안 되는 문제
-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수급비

○의견

▶까다로운 제도 개선

-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의 접근성이 떨어져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다행히 이웃이나 적극적인 공무원의 권유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차가 까다로워 겁을 내느라 버거워합니다.
- 부양의무자 제도,, 독거노인과 가족과의 관계가 이해하기 어렵다
- 경직된 제도 운영. 사례) 쫓다 뺏는 기초연금
- 가족이라는 의미가 많이 변화되고 있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가족 책임론은 맞지 않음. 국가적 책임이라고 생각됨.
- 심사 기간이 너무 깁니다. 기다리다 굶어 죽습니다.
- 제도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 모르고 복잡하게만 제도를 만드는 것 같다.

▶근로소득 삭감이 문제다

- 일하면 삭감되는 구조가 더욱 수급비에 더 의존하도록 하게 만들고있음
- 탈수급위해 일하면 수급비 삭감 복지병 양산 수급자 자활근로 5년 후 종료되어도 다시돌아와 10년 20년 자활근로 하는 현실
- 최소한의 수급비지원으로 어려운생활에 소소한일이라도 하여 생계유지를 하려하면 수급비를 삭감해버리는 문제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하지못하여 생계유지에는 어려움이 있다
- 자립, 자활, 근로를 위해서라면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적금을 들거나 자금을 마련하면 소득으로 산정되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 소득이 생기는만큼 바로 차감이 되어 근로의지를 꺾어버립니다. 파트타임이나 소소한 일을 하는데도 수급자로서의 수급비 삭감이나 수급권 박탈이 걱정되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유예기간이나 준비기간을 도와줄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 일하면서 수급비가 깎이는게 사실 서럽습니다. 수급비가 안 깎인다고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서민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어요. 적어도 저축도 하구요.
- 알바같은거 하고 싶어도 수급자라서 떨어질까봐 못한다.
- 지금은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지고, 수술해서 일을 못한다. 그전에는 조금이라도 일하면 삭감됐다. 넉넉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말이 안된다.
- 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무능력자가 되어한다.

▶근로능력평가 현실성 없다

- 근로능력평가에서 탈락되고 아픈 몸이라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소득이 없이 쪽방이나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 일반수급을 받고 싶었는데 근로능력이 있다 해서 조건부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 65세가 넘어도 일할수있는데 일을 못하게하니까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렵다.
- 큰 수술을 보라매병원에서 5번 받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술 집도 의가 성형외과 의사라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서를 3번 제출했는데 모두 퇴짜 맞았습니다.
- 아픈 곳이 많은데 제대로 설명이 안되서 진료 기록을 제출하면 다시 제출하라고 하니 무척 힘들다.

▶낙인으로 인한 고충

-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 아들딸 세금으로 수급비 준다" 그런 말을 한다. 차별적.
- 수급자라 하면 사람들 시선이 안좋게 느껴집니다.
- 구분하고 계층지어서 자생할 수 있는 자존감을 낮추면 안됩니다.
- 최저생계비 기준에 낮은 수급비와 수급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
- 건강검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수급자는 검진받는 줄이 따로 있어 기분 나빴다.

5.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① 긍정적인 평가 의견

-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과의 차이, 부정수급의 문제, 부양의무자에 대한 악용 혹은 이로 인한 가정의 해체(법률적 해체)를 야기하는 점, 추정소득으로 인한 딜레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 꼭 필요한 제도
- 전반적으로는 만족하는데 급여비가 너무 적다. 한달 60만원 가지고 어렵다.
- 있는건 좋은데 기준이 까다롭다. 차상위에 해당하는데 지원도 너무 없고 연금도 너무 조금이다. 보장이 더 커지면 좋겠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참 잘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이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자체는 고마운데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찬성함.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수급비 수준 등은 변화가 필요함.
- 제도는 좋은데 인상을 조금 해주시기 바람. 수고하신 복지사님과 모든분께 감사하면서. 복지행정에 좋은 참고 바랍니다.

② 원하는 개선 방향

- 국가는 일을 할 수 없고 가난한 상황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라고 합니다. 마땅히 보장받아야하는 권리에 대해 국가는 낙인을 씌우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 살 방법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 1위 국가에서 기본생존권 보장에 대한 탄탄한 제도적 장치와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 생존권을 침해하는 그 무엇도 안 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개념이 생긴 것이 2000년 벌써 2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의 권리임이 잘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의 권리임을 홍보하여 송파세모녀, 수원세모녀, 구리의 청년아빠와 같은 슬픈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여 국가의 책무를 제한하고 있다
 - 이 땅의 모든 법, 행정대책, 해답을 현장에. 주민들 생각과 삶 속에.
 -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
 - 일하게 되면 수급탈락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오히려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느껴진다
- 최소한의 삶, 최소한의 복지를 추구하고는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무제도가 아직도 영향력이 있어서 사례대상자 어르신 한 분은 아들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생활보장비는 좀 올려야 됩니다. 적다. 외국에 비해서도. 왜 우리는 선진국이라더니.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선에 대해 다시 한번
- 서류 준비도 어렵고 돈 주고 하는 것도 기준에 사람이 살면서 딱 맞추기가 어려운데 융통성이 없다.
- 주는대로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일방적인 사고방식 문제. 줬다 뺏는 노령 연금.
- 보장이 되어서 아픈 사람들이 생기 있게 살게해야한다
- 건강한 사람을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먹고살지. 수급비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다고 일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 우리나라는 중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든 수급자 등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들에게 평등하고 보편적인 행정처리로 모두들 잘 살 수 있는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누구나평등하게 해달라. 말 만 평등하지 생활에서 수급자에 대한 대우는 그렇지않다. 차별하지 말라
- 까다로운 제도로 인해서 돈의동 쪽방지역에서 선정대상임에도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제도를 쉽게 좀 고쳐라.
- 기초생활수급자라 얘기하면 안좋게 본다. "세금으로 일도 안하고 놀고먹는다" 말한다. 근데 나는 몸도 안좋고 일을 못한다.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 제 주위에 쪽방촌에 기거하면서 정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이 많습시다. 무지해서, 혹은 병원에서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겨우 주거급여만 받으면서 연명하시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시다. 제대로 걸지도 못하는데 병명이 안 나와서, 가족이 있어서, 연락

도 안되는 자녀가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지 않아서 어렵게 살다가 한평도 되지않는 방에서 돌아가시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한사람의 인권이 존엄성이 무시 당한채 사망해서 서울시 공영 장례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 자활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직영화했으면 합니다.
- 더 두터운 보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큼니다. 진정한 약자복지 필요

우리들의 힘으로 수급자 권리 실현하자!

기초생활수급자 권리선언문

“여전히 수급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수급권자에게 따라붙는 차별과 낙인을 거부한다.

: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는 세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에 처하더라도 누구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의 약속이다. 우리는 ‘게으른 이’, ‘세금으로 놓고 먹는 이’같은 몰이해와 낙인의 딱지를 거부하고, 차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제도 운영에 민주적인 참여 보장을 요구한다.

: 우리는 알권리를 가진 국민이자, 복지제도를 보장받는 수급권자다. 담당 공무원조차 이해가 힘들 만큼 복잡한 제도는 우리를 수동적인 서비스의 수혜자로 만든다. 신청과 심사를 간소화하고, 비전문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제도를 만들라. 일방적 심사에서 벗어나 이의신청 창구를 확대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라. 또한 복지 기준선을 결정짓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투명하게 공개해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마땅히 보장받아야하는 권리에 대해 국가는 낙인을 씌우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 비참을 파헤치는 선정기준 개선하고,
권리를 우선해 수급권을 보장하라.**

: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수급신청자는 너무나 까다로운 심사와 평가를 맞닥뜨린다. 가난과 비참을 읊소해야만 작동하는 제도는 이미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구걸이 아닌 권리를 요구한다.

“가족의 의미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가족 책임론은 맞지 않습니다. 국가적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 가족에게 가난의 짐을 떠안기는 부양의무자기준,
이젠 완전히 폐기할 때다.**

: 폐지도 아닌 일부 조건 완화로 수급권자를 기만하지 말라. 정부의 반복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언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없는 것이라는 오해가 많다. 그러나 수급 신청을 하려는 많은 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앞에서 다시 좌절하고 있다. 가족에게 가난을 짐지우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이제는 완전히 폐지 할 때다.

“생계급여는 여름 한 철 과일도 못 먹을 정도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복날 닭한마리 먹기도 어렵습니다.

주거급여 역시 원룸텔도 얻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급여 인상이
필요합니다.”

하나. 물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수급비를 요구한다.

: 물가 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로 인해 생계비로 월세를 보충하거나, 병원비와 기타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와 문화생활은 단절되고, 단지 먹고 자며 하루를 버티는 일 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생존을 넘어 존엄을 요구한다. 미래를 계획하고 일상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수급비를 보장하라.

“근로능력평가가 여전히 까다로워서 몸이 아파도
공공근로를 해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 강제적인 조건부과 폐지하고 권리중심 자활일자리 보장하라.

: 일하기 곤란한 상황임에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은 이들은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박탈당하며, 때로는 건강을 크게 해치며 일하고 있다. 조건부과는 근로를 복지의 강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점, 평가 과정이 부정확한 점,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자활 일자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일자리다. 자활사업 참여는 조건이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한다.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빈곤층을 내몰지 말고 탈빈곤 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일을 꾸준히 오래 할 건강은 못 되지만, 일해도 급여가 깎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탈빈곤 없는 탈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약간의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알뜰한 소득공제율은 우리의 노동을 보람도, 미래도 없는 것으로 만든다.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일하며 부족한 급여를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노동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지, 수급에서 탈락해 더 큰 빈곤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일 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3년 9월 5일
기초법 시민 평가단 일동

[MEMO]

[MEMO]
